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5. 26 선고 2019가단134684 판결 [압류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정

피 고

피고보조참가인

서울특별시 중랑구

소송대리인 B, C

서울특별시

소송대리인 D

변론 종결 2020. 4. 28

판결 선고 2020. 5. 26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2. 11. 6. 접수 제63235호로 마친 압류등기 및 2019. 4. 2. 접수 제1774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1992. 6. 5. E 주식회사(이하 이라고만 한다)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, 1994. 4. 22.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나. 원고는 1996. 3. 21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. 2. 18.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다. ① 피고는 E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1992. 11. 5.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, 1992. 11. 6. 위 압류등기를 하였다.

② 또한, 피고는 2019. 2. 21. 피고의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, 2019. 4. 2. 위 압류등기를 하였다.

2019. 9. 2. 당시 위 ② 압류와 관련된 피고의 체납 재산세액은 원금 840,840원과 가산세 25,100원 합계 865,940원이다.

[인정근거] 갑 제1호증,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측의 본안전 항변 및 판단

가. 피고측의 본안전 항변

피고는 E이 체납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E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

1의 다.항 기재 ① 압류를 한 것이고,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수인 에 불과하여 위 ① 압류에 대하여 사실상,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 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,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위 ①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.

나. 판단

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집행방법인 압 류등기와는 구별되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을 압류처분 자체의 무효를 구하 는 것으로 볼 수 없고(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),행정처분 이 당연무효라면 그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룰 수 있다고 할 것이며,법원 역시 그 행정 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 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다35992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위 ① 압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 고 주장의 요지는,위 ① 압류는 후에 위 압류 당시 체납된 E의 조세채무가 전액 변제 되어 실효되었다고 할 수 있어 위 ①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고,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기한 장애배제청구로서 체납처분인 위 ① 압 류의 무효를 전제로 그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따라서 원 고가 이 사건 소 중 위 ① 압류등기의 말소 청구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,피고측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위 1의 다.항 기재 ① 압류는 E의 체납 세액이 전액 변제되어 실효되었고,위 ② 압류는 그 등기 원인이 없거나 불분명하여 무효이므로,위 ①,② 각 압류등기(이하, 위 ①,② 각 압류등기를 통틀어 '이 사건 각 압류등기'라 한다)도 무효이어서 말소되어 야 한다.

나.판단

지방세징수법 제55조,제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,지방세 체납처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말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등기소에 촉탁하 여야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처분으로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는 한 위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.

위 ① 압류는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처 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설사 위 압류처분 후에 그 체납 세액이 전부 변제되었 다 하더라도 위 ① 압류가 당연히 실효되어 위 ① 압류등기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 고, 또한 위 ② 압류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 소유자인 원고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처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위 ② 압류등기가 당연히 무효인 처분에 의하여 경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행순

별지